

환 경 부

징계 · 주의 요구

제 목 하수도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양군

징계 대상자 ① 양양군 ○○○○과 지방○○○○(전 지방○○○○○○) ○○○
② 양양군 ○○○○과 지방○○○○(전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양양군 ○○○○과 지방○○○○ ○○○는 2015. 7.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의 변경계약 실무담당자였으며, 양양군 ○○○○과 지방○○○○ ○○○은 2015. 4.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서의 실무담당자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과업내용의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 하수도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양양군 ○○○○과는 총사업비 4,756백만원(국비 3,328백만원, 도비 427백만원, 군비 1,001백만원)의 “○○○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¹⁶³⁾”을 추진하면서, 설계 감리비 669.5백만원의 용역을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등의 절차¹⁶⁴⁾를 거쳐 발주하여야 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¹⁶⁵⁾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조건은 대상공사에 적용된 사업관리방식이 모두 같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의 관리”인 경우에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발주되어 시행중에 있는 건설공사이거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사업관리방식(예.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등)이 적용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¹⁶⁶⁾

○○○○과-00000호(2015. 8. 20.) “○○○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계획”을 통하여 2014. 3. 5.에 계약금액 870백만원으로 ○○○○○○○(주) 외 2개 업체((주)○○○○○○○○, (주)○○○○○○○○○○)와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에 통합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163) ○○군 ○○면 ○○○○리, ○○○(○○○), ○○○○리 일원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위생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마을하수도를 통합, 고도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수세변소수의 직유입이 가능한 관거로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64) 계약심사, 일상감사, 시행품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최종입찰(PQ)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165)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166) 국토교통부-전자민원-자주하는 질문(FAQ) “발주시기가 다른 두 개 현장의 통합감리 가능 여부(등록 2014. 11. 13., 수정 2015.12.11.)”(○○○○과)

그 결과, “○○○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하여야 할 별도의 용역이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계약부서인 세무회계과에 통보함으로써 ○○○○○○○(주) 외 2개 업체((주)○○○○○○○○○, (주)○○○○○○○○○)가 용역비 439.5백만원을 경쟁 없이 수주하였다.

2.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변경계약 부적정

양양군 ○○○○과는 “○○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을 목적으로 2014. 3. 5.에 계약금액 870백만원으로 ○○○○○○○(주) 외 2개 업체((주)○○○○○○○○○, (주)○○○○○○○○○)와 계약을 체결(2014. 3. 10.~2017. 3. 9.)한 계약담당부서로서

○○○○과에서 요청한 변경계약이 「지방계약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규정된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업무 외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인 “추가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님으로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을 2015. 10. 1.에 변경계약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인 ○○○○○○○(주) 외 2개 업체((주)○○○○○○○○○, (주)○○○○○○○○○○○)가 439.5백만원(용역기간 중 6개월)을 부당하게 수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용역명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	
과업 위치	○○군 ○○리 외 9개리·○ ○면 ○○리 외 2개리	○○군 ○○리 외 9개리·○ ○면 ○○리 외 2개리, ○○면 ○○○리	○○면 ○○○리	
과업 범위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 1식	○○·○○ 하수관거정비사업,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통합책임감리 1식	○○○리 농어촌마 을 하수도설치사업	
용역 기간	2014.3.10.~2017.3.9	2014.3.10~2017.9.5	6개월 증	
용역비	870,287천원	1,309,800천원	439,513천원 증	

조치할 사항 양양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수도설치사업 등의 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